**제3066호**
**2024. 2. 26.**

발 행 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
편 집 인 :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
전화 : 3396-4955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| 선람 | 기관의장 |
|---|---|
| | |

# 구 보

◉ 자치법규
[입법예고]
제218호 :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····· 2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http://www.junggu.seoul.kr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◉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◉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| 공람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 | | | | |

서울특별시중구



## 자 치 법 규
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18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2월 26일

**서울특별시 중구청장**

##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**1. 제정이유**

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2023.4.27.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**2. 주요내용**

**가. 조례 제명 변경**

○ (현행)서울특별시 중구 **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**에 관한 조례 → **(변경)**서울특별시 중구 **자율방범대 지원**에 관한 조례

**나. 자율방범대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, 제2조)**

**다.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**

**라.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**

**마.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~10조)**

○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절차, 지원 중단 사유, 정산 방법 등 규정

○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, 환수 근거 마련

○ 별지 제1호 서식~제3호 서식 신설

**바. 자율방범대 포상 사항 규정(안 제11조)**

**3. 의견제출**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자치행정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자치행정과, 전화 : 02-3396-4573, 팩스 : 02-3396-8612, email : hy1005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**

**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**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http://www.junggu.seoul.kr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

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·범죄예방·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”(이하 “자율방범대”라 한다)란 중구의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(이하 “경찰서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2. “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연합대”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.
3. “자율방범대원”(이하 “방범대원”이라 한다)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자율방범활동)**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범죄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범죄의 신고 활동
2.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
3. 중구 관할 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4.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
**제5조(경비 지원 등)**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3조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(이하 “자율방범대 등”이라 한다)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 규모와 전년도 활동실적, 제9조에 따른 지도·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신청 등)** ① 제5조에 따라 방범대원의 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중단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3.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
4.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**제8조(정산)**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
2.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
3.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

**제9조(지도 및 감독)**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·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·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·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·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환수)**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자율방범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**제11조(포상)**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등과 방범대원을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**제12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의 시행 전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



**[별지 제1호서식]**

# 0000년 00분기 00자율방범대 · 연합대 지원금 신청서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신청인 | 방범대명 | _____자율방범대 | 대원수 | 명 |
| | 방범대장 | | 연락처 | |
| 신청내역 | 신청금액 | 금 원 | | |
| | 입금계좌 | ◦ 은 행 명 :<br>◦ 계좌번호 :<br>◦ 예 금 주 : (직위 : ) | | |
| 사업내용 | 사 업 명 | 00 자율방범대 자율방범활동 | | |
| | 사업계획 | | | |
| | 기 간 | . . . ~ . . . | | |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작성자: ○○자율방범대·연합대장 (인)

※ 첨부서류 : 통장사본, 체크카드

[별지 제2호서식]

# 0000년 00분기 00자율방범대 · 연합대 지원금 정산서

## 1. 운영비 정산서

(단위: 원)

| 수령액 | 이월액 | 집행액 | 잔 액 | 이자수입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

## 2. 순찰실적

| 구 분 | 순찰횟수 | 순찰인원 | 주요 순찰코스 |
|---|---|---|---|
| 계 | | | |
| 0월 | | | |
| 0월 | | | |
| 0월 | | | |

## 3. 세부 집행내역

(단위: 원)

| 연번 | 지출일자 | 지출액 | 지출내역 | 사용처 (상호)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합계 | | | | | |

※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 작성 후 영수증 등 첨부

년 월 일

지출관 : ○○자율방범대·연합대 성명 (인)





[별지 제3호서식]

# 지 출 결 의 서

| 제000호 | 결재 | 담당자 | 총무 | 대장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
| 지출과목 (비목) | 야식비/ 운영비/ 소모성운용비 등 | | 지출일 | 2024.00.00. |
| 지출금액 | 일금 한글기재 원정(₩숫자 기재) | | | |
| 지 출 내 용 | | | | |
| 사용처 | | | 지출방법 | |

○ 건 명 :

○ 일 자 : 0000. 00. 00.(0요일)

○ 채 주 :

○ 금 액 : 원

○ 지출세부내역(산출근거) :

※ 첨 부 :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

**[별지 제4호서식]**

| 조 장 | 방범대장 |
|---|---|
| | |

# ○ ○ 자율방범대·연합대 방범일지

**년 월**

| 순찰일시 | 순찰인원 | 근 무 자 | 서 명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월 일<br>( 요일)<br>: ~ :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| 순찰내용 | 순찰사진 |
|---|---|
| | |